

## 서 면 답 변 서

### ○ 강감창 의원

(질의요지)

-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
  - 먼저 자전거도로 관련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
  - 가칭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
  -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관한 시방서 마련하여 향후 자전거도로 포장 및 정비에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

(답 변)

- 자전거도로 포장재 설치현황
  - 차도 : 아스팔트 포장, 일부분 유색포장(적색, 녹색) 도포 등
  - 보도 : 투수콘, 깔라 보도블록 등
  - 한강 : 아스팔트, 투수콘(적색, 녹색), 마사토 포장 등
  - 지천 : 투수콘(적색, 녹색) 등
- 자전거도로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
  - 금년 3월 13일 우리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공동으로 『자전거도로 설치 지침』을 제정하여 차도상에 설치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계하는데 이용하고 있음
    - 차도상 자전거전용도로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 그대로 활용
  - 『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』 제6조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조례규정에 의하여 『자전거도로 설치 지침』등을 수립하여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임
  - 따라서, 자전거도로 포장과 관련하여 관련법과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고
  - 자치구에도 정기적으로 자전거 관련시설을 점검, 순찰하도록 통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-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
  - 자전거도로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으나, 현재 우리시에 설계용역 및 기술심의를 위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, 자전거교통추진반에서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시 활용하고자 함
-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관한 시방서 마련과 관련하여

- 자전거도로 포장은 차도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포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포장이 적용되고 있음
- 차도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포장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나 도로공사 등 각 기관에서 제시한 시방서가 제시되어 있음
- 그외 하천, 공원 등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(아스팔트 포장, 콘크리트 포장, 수지계 포장, 도막바닥 포장, 황토 포장, 블록 포장)은 각각의 재료적,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통일된 시방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- 통일된 시방기준보다 각각의 자전거도로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
-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시 어떤 포장공법을 선택할 것인지 발주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,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, 시공중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전문책임감리의 감리하에 정밀 시공을 유도하고 있음
- 추후 통일된 시방기준 마련을 위한 “자전거도로 포장 품질기준 및 시방에 관한 연구”를 학술용역으로 내년에 별도 발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자 함
  - 수지계 포장(조달청에 35개 등록)
  - 도막바닥 포장(조달청에 25개 등록)

※ 별첨 : 자전거도로 포장관련 법령 내용. 끝.

## 별첨

###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9조(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·시설기준)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·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규칙

제15조(포장 및 배수) ①자전거도로(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.5 내지 2.0퍼센트의 횡단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수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####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6조(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·시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자전거도로의 유형별, 하천·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
2. 자전거도로의 포장, 차선,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
3. 육교·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·관리기준
4.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

####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

자전거전용도로의 포장 색깔은 분리대·연석·방호울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. 다만, 시인성을 높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횡단보도 전·후 등에는 포장색깔을 달리할 수 있다.